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717호 2019. 9. 25.(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제2019-111호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 및 도로명 변경 고시 ..... 2

제2019-113호 도로명주소 고시 ..... 8

## 공 고

제2019-1165호 주민투표 발의 공고 ..... 10

제2019-1169호 거창군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 11

제2019-1181호 2019년도 제2회 거창군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 12

제2019-1186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5

제2019-1188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3

제2019-1190호 「거창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0

제2019-1191호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46

<b>회 람</b>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 및 도로명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 및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년 9 월 19 일

### 거 창 군 수

1. 고 시 일 : 2019. 9. 19.
2. 고시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3. 고시내용
  - 1) 도로구간 변경 및 도로명 변경

순번	변경전	변경후	도로구간 변경· 설정 사유	고시일	비 고
1	지내2길	지내2길 죽동1길	주민 요청에 따라 지내2길을 지내2길과 죽동1길로 변경	2019. 9. 19.	

#### 2) 도로명 변경

순번	변경전	변경후	부여사유	고시일	비 고
1	지내길	갈지길	2017년 10월 마을명이 지내마을에서 갈지마을로 변경되어 도로명 변경 요청	2019. 9. 19.	
2	지내1길	갈지1길	2017년 10월 마을명이 지내마을에서 갈지마을로 변경되어 도로명 변경 요청	2019. 9. 19.	
3	지내2길	갈지2길	2017년 10월 마을명이 지내마을에서 갈지마을로 변경되어 도로명 변경 요청	2019. 9. 19.	

####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b>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b> 주소사용자 신청 또는 군수 등 직접추진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b>주민 의견 수렴 공고</b> 14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b>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b>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b>공고 및 신청인 통보</b>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b>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b>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b>고시 및 신청인 통보</b>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b>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b>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b>공고 및 신청인 통보</b> 결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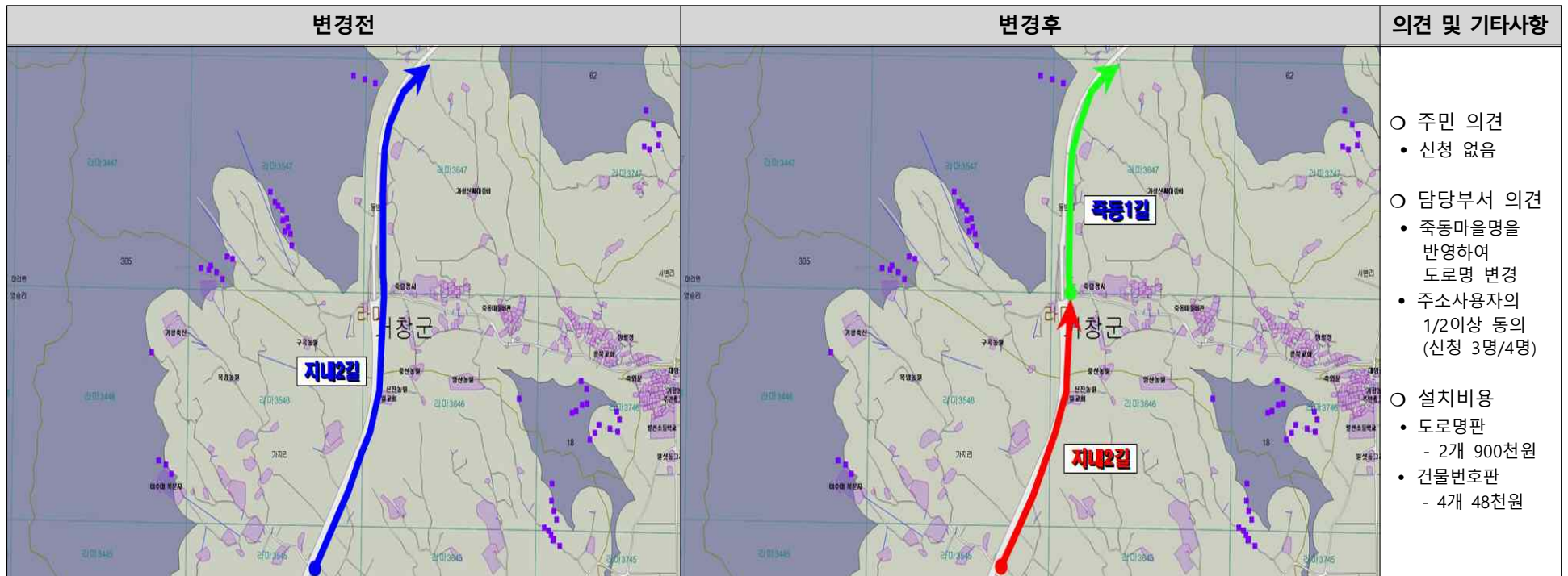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가능하며,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 5년 동안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055-940-33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

# 도로구간 · 도로명 변경조서 및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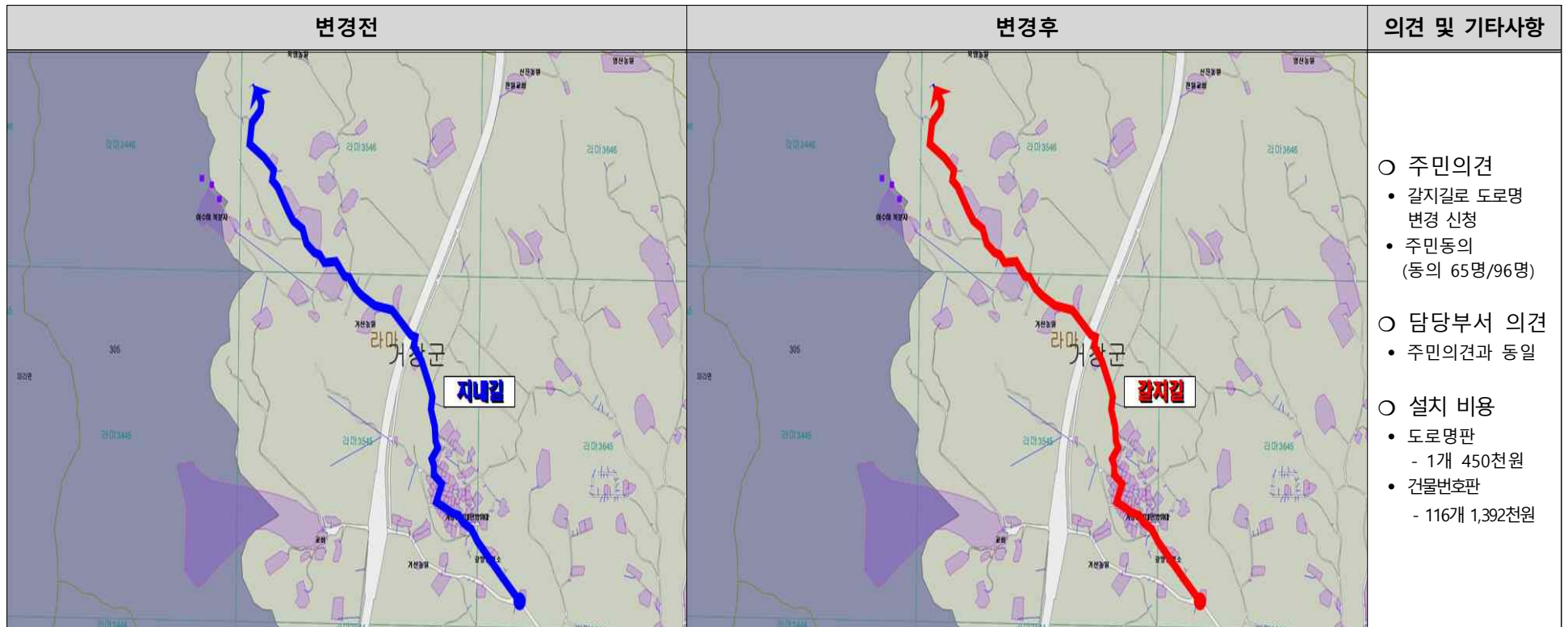
구분	도로명	도로길이 (m)	폭 (m)	도로 구간		중심선	기초 구간	기초간격 (m)	관할 행정구역	도로구간 변경·설정 사유	고시일
				시점	종점						
변경 전	지내2길	2,375	26	거창읍 가지리 1493-2	거창읍 동변리 산222-5	도면참조	1→476	10	거창읍	침녕쿨의 뿌리에 속한다하여 붙여진 이름	2019. 9.19.
변경 후	지내2길	1,280	26	거창읍 가지리 1493-2	거창읍 동변리 산200-5	도면참조	1→256	10	거창읍	주민 요청에 따라 지내2길을 지내2길과 죽동1길로 변경	
	죽동1길	1,090	26	거창읍 동변리 산200-5	거창읍 동변리 산222-5	도면참조	1→220	10	거창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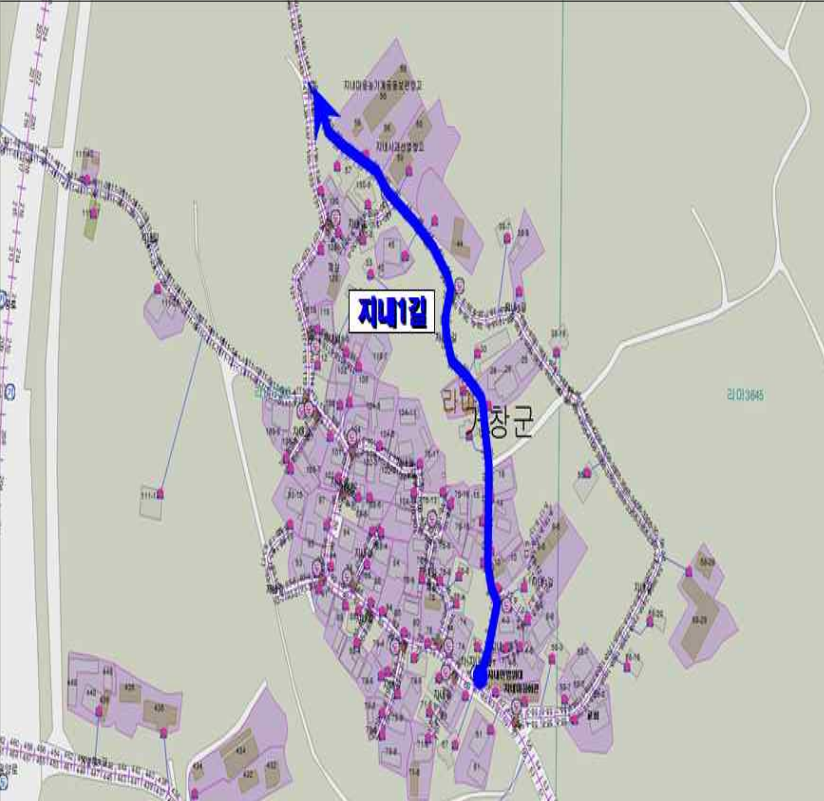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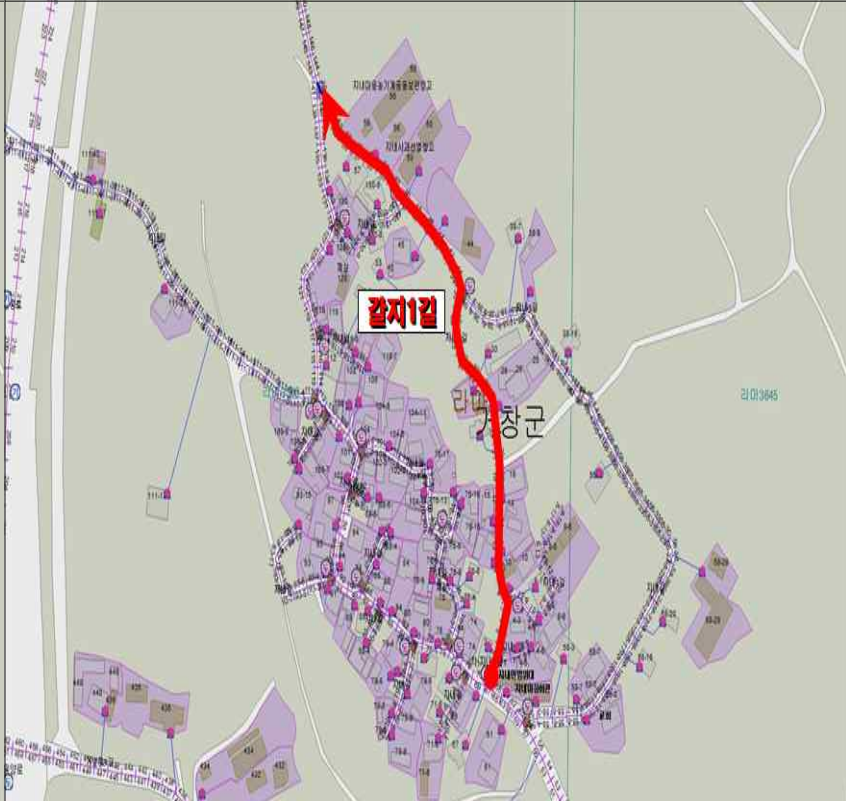
## 붙임2

# 도로명 변경 조사 및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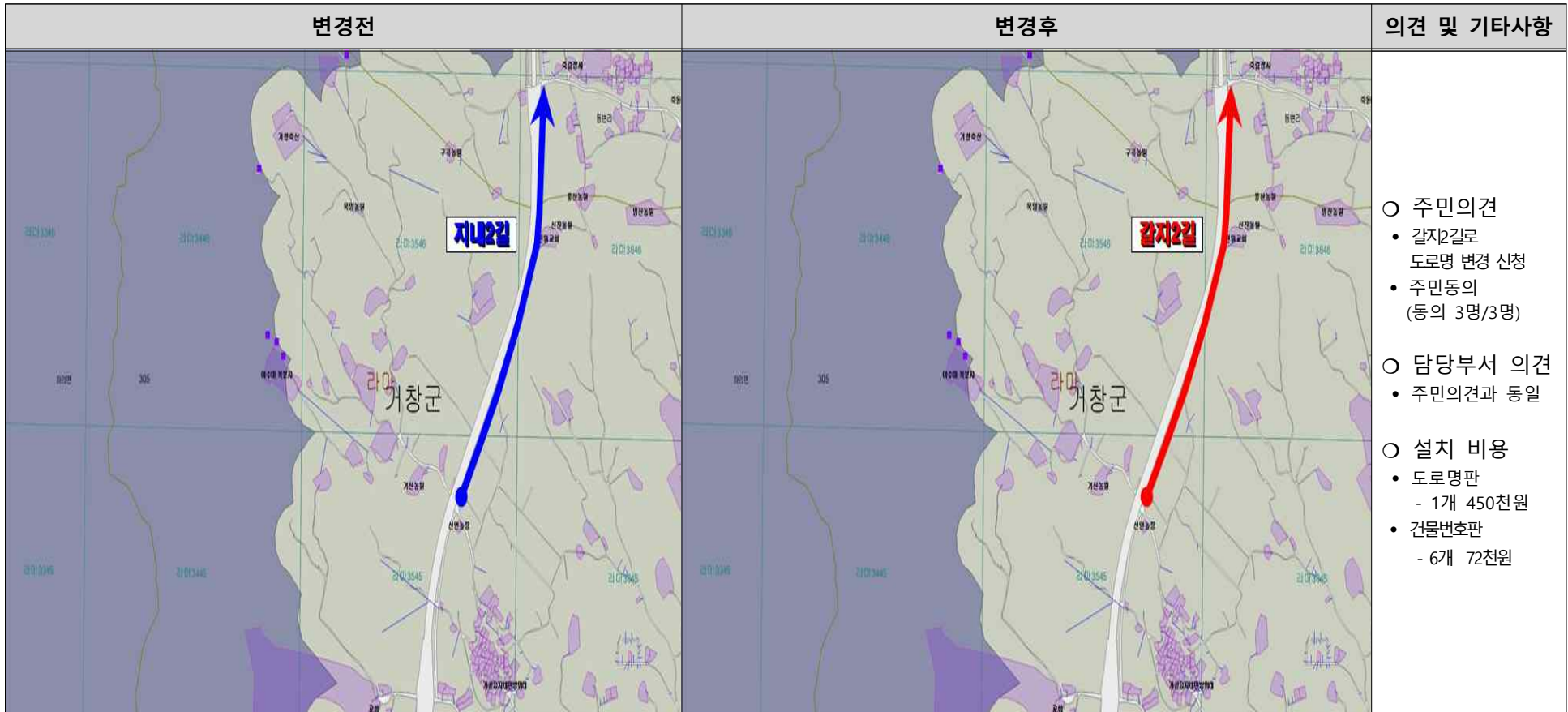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분	도로명	기점	종점	중심선	건물번호판	주소사용자	도로명 부여(변경) 사유	고시일
1	거창읍	변경전	지내길	거창읍 가지리 994-1	거창읍 가지리 1019-7	도면 참조	116개소	96명	침녕쿨의 뿌리에 속한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2019. 9. 19.
	거창읍	변경후	갈지길	거창읍 가지리 994-1	거창읍 가지리 1019-7	도면 참조	116개소	96명	2017년 10월 마을명이 지내마을에서 갈지마을로 변경되어 도로명도 변경요청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분	도로명	기점	종점	중심선	건물번호판	주소사용자	도로명 부여(변경) 사유	고시일
2	거창읍	변경전	지내1길	거창읍 가지리 1441-16	거창읍 가지리 산250-5	도면 참조	23개소	22명	지내길을 시점으로 하여 분기되는 첫 번째 도로	2019. 9. 19.
	거창읍	변경후	갈지1길	거창읍 가지리 1441-16	거창읍 가지리 산250-5	도면 참조	23개소	22명	2017년 10월 마을명이 지내마을에서 갈지마을로 변경되어 도로명도 변경요청	

변경전	변경후	의견 및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지1길로 도로명 변경 신청</li> <li>• 주민동의 (동의 17명/22명)</li> </ul> </li> <li>○ 담당부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견과 동일</li> </ul> </li> <li>○ 설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명판 - 1개 450천원</li> <li>• 건물번호판 - 23개 276천원</li> </ul> </li> </ul>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분	도로명	기점	종점	중심선	건물번호판	주소사용자	도로명 부여(변경) 사유	고시일
3	거창읍	변경전	지내2길	거창읍 가지리 1493-2	거창읍 동변리 산200-5	도면 참조	7개소	3명	지내길을 시점으로 하여 분기되는 두 번째 도로	2019. 9. 19.
	거창읍	변경후	갈지2길	거창읍 가지리 1493-2	거창읍 동변리 산200-5	도면 참조	7개소	3명	2017년 10월 마을명이 지내마을에서 갈지마을로 변경되어 도로명도 변경요청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25.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남진1길 56 등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576, 산133-3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869	2009-12-28	2019-09-25	행정구역 고제면을 지나가는 도로라 하여 고제로라 명명	
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465-5, 471-7, 471-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남진1길 56	2009-04-01	2019-09-25	진목의 남쪽에 위치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247-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용문들길 83	2018-05-02	2019-09-25	북상면 농산리 대표적인 들인 용문들 명칭 반영	

## 주민투표 발의 공고

「주민투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민투표일 : 2019. 10. 16.(수)
2. 주민투표안 :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
3. 주민투표 형식 : 현재 장소 추진 찬성 또는 거창 내 이전 찬성 중 택일
4. 주민투표 실시구역 : 거창군 전체

2019년 9월 23일

거창군수

●거창군 공고 제2019-1169호

## 거창군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5-46호(2015.04.23.)로 실시계획 인가된 거창군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원)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9년 09월 26일

### 거창군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36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원)사업
  - 명 칭 : 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의 규모 : A=38,806.9m<sup>2</sup>
    - 도 로 : L=447m, B=8m, A=4,710.6m<sup>2</sup>
    - 주차장 : A=17,436.3m<sup>2</sup>
    - 공 원 : A=16,660.0m<sup>2</sup>(건축면적 A=2,798.54m<sup>2</sup>, 연면적 A=3,353.35m<sup>2</sup>)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
4. 사업시행기간 : 2015. 04. 23. ~ 2019. 09. 10.
5.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제2회 거창군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2019년도 제2회 거창군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9월 24일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비고
거창군 (결원부서)	시설(일반토목)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8호	3명	
	시설(건축)		3명	

## 2. 응시 자격 요건

###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소 속	임용등급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거창군 (결원부서)	지방한시 임기제공무원 8호	시설 (일반토목)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기준 각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실무경력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 기관,민간기업 등에서 건축, 토목분야 등 근무경력
		시설 (건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다. 직무내용

근무 부서	임용예정 분야	임 용 예정등급	인원	직 무 내 용
거 창 군 결원부서	시설	지방한시임기제 (제8호)	3명	○ 일반토목 - 건설 및 토목 등 행정 업무 전반
			3명	○ 건 축 - 건축 및 시설물 관리 업무 전반

### 3.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4. 임용 기간 및 근무시간

- 임용기간 : 1년
- 근무시간 : 1주 35시간

## 5. 보수 수준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제29조4 규정에 의거 책정

등 급 별	월급여액 (주40시간 기준)	비 고
지방한시임기제 "8"호	1,783,100원/월	제수당 별도 지급

※ 월급여액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 6. 시험 방법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 (적격 또는 부적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검정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7.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19. 10. 10. ~ 10. 14.(3일간) ※ 기간 중 업무시간 내(09:00~18:00)	2019.10.15.(월)	2019.10.24.(목)	2019.10.25.(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news>)에 게시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나. 접수장소 :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거창군 수입증지 대신 ① 「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 「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9.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 10.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함.

- 응시수수료 : 거창군수입증지(한시임기제 8호 5,000원)

(거창군청 내 민원봉사실 판매)

※ 우편접수시 거창군수입증지(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경력, 자격, 상훈 등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http://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가.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집계 결과)
- 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거창군홈페이지 새소식에 게시



## 12.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람
-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
- 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 마.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바.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음
- 사.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아.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거창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자.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거창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행정담당 ☎055-940-3172)로 문의하시기 바람.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거창군 수입증지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증지 날인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학위만 기재)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인)

# 자 기 소 개 서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성명	
2019. . . 작성자 :					(인)

# 직무수행계획서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성명	
2019. . . 작성자 :					(인)

-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하는 분야 (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으로 작성
-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작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1. 이용기관 명칭 :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원 채용절차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거창 향노화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 도로명 주소사업,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등 정부 및 군 시책 추진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정원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조정(안 제25조)

1) 정원 총수 증28명 : 702명 → 730명

2) 집행기관 정원 증28명 : 688명 → 716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4)

1)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28명

가) 현행 : 628명(본청300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37명, 읍39명, 면140명)

나) 조정 : 656명(본청309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8명, 사업소37명, 읍40명, 면151명)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hyungoing@korea.kr

붙임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702명”을 “7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88명”을 “716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30 702	331 322	14	141 134	67	74 67	41	41 40	162 151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98 670	327 318	14	114 107	40	74 67	40	41 40	162 151
	4급	3	3							
	4~5급	2	0		1		1		1	
	5급	37	15	3	5	4	1	3	0	11
	6급 이하	656 628	309 300	11	108 101	36	72 65	37	40 39	151 140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5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거창군 공고 제2019-1188호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  
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거창 향노화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 도로명 주소사업,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등 정부 및 군 시책 추진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일반직 6급 정원 증 2명(안 별표 3)
    - 1) 본청 6급 증2명 : 행정·사회복지1, 행정·농업·녹지·시설1
  - 나. 일반직 7급 정원 증5명(안 별표 3)
    - 1) 본청 7급 증1명 : 행정·농업·녹지·시설 1
    - 2) 직속기관 7급 증2명 : 보건·의료기술·간호 1, 간호 1
    - 3) 면 7급 증2명 : 행정·사회복지 2
  - 다. 일반직 8급 정원 증10명(안 별표 3)
  - 다. 일반직 9급 정원 증11명(안 별표 3)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hyungoing@korea.kr](mailto:hyungoing@korea.kr)

붙임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02 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688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

**제27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도붙임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시행규칙 별표3 1부. 끝.

거창군 공고 제2019-1190호

## 「거창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거창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서비스 추진과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른 면 기관 명칭을 변경함
3. 주요내용
  - 가. 면 기관 명칭이 모두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함  
(안 제명·제1조·제2조)
  - 나. 면 기관 명칭 변경함(안 별표)
    - 1) 웅양면사무소 ⇒ 웅양면 행정복지센터
    - 2) 고제면사무소 ⇒ 고제면 행정복지센터
    - 3) 북상면사무소 ⇒ 북상면 행정복지센터
    - 4) 마리면사무소 ⇒ 마리면 행정복지센터
    - 5) 남하면사무소 ⇒ 남하면 행정복지센터
    - 6) 신원면사무소 ⇒ 신원면 행정복지센터
    - 7) 가북면사무소 ⇒ 가북면 행정복지센터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hyungoing@korea.kr

붙임 거창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로 한다.

제2조 중 “군·읍·면사무소”를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기 관 명	소 재 지
거창군청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90
주상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
응양면 행정복지센터 <del>응양면 사무소</del>	거창군 응양면 응양로 1431
고제면 행정복지센터 <del>고제면 사무소</del>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14
북상면 행정복지센터 <del>북상면 사무소</del>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10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4
마리면 행정복지센터 <del>마리면 사무소</del>	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18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36
남하면 행정복지센터 <del>남하면 사무소</del>	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41
신원면 행정복지센터 <del>신원면 사무소</del>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67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8
가북면 행정복지센터 <del>가북면 사무소</del>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17-16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1. 특별시·광역시 및 도: 시·군 또는 자치구
2.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3. 특별자치시 및 시·군·자치구: 읍·면 또는 동

거창군 공고 제2019-1191호

##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 거 창 군 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2. 제정이유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질병확산을 최소화 하고자 이 조례(규칙)를 제정함.

### 3. 주요내용

가. 방역소 명칭 및 위치를 정함. (안 제3조)

1) 소재지는 거창읍 대평리 554-1번지 일원에 둔다

나. 방역소의 기능을 정함. (안 제4조)

1) 축산농가 세척·소독 및 소독필증발급

다. 방역소의 운영방법을 정함. (안 제5조)

1) 평시방역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특별방역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라. 방역소 운영위탁(안 제6조)

1) 방역소 관리·운영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9. 24. ~ 2019. 10. 14.(20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농업축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47)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축산과

- 전화번호 : 055)940-8142, FAX : 055)940-811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자치법규명 :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9-
----------	-------

제출일자	2019. 9. .
제 출 자	농업축산과장

## 1. 제안 이유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질병확산을 최소화 하고자 이 조례(규칙)를 제정함.

## 2. 주요내용

가. 방역소 명칭 및 위치를 정함. (안 제3조)

1) 소재지는 거창읍 대평리 554-1번지 일원에 둔다

나. 방역소의 기능을 정함. (안 제4조)

1) 축산농가 세척·소독 및 소독필증발급

다. 방역소의 운영방법을 정함. (안 제5조)

1) 평시방역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특별방역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라. 방역소 운영위탁(안 제6조)

1) 방역소 관리·운영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합 의: 해당사항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9. 9. 24. ~ 10. 14.(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분석결과반영 여부

#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농업기술센터(농업축산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질병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립한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종합방역소”란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한 차단방역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세척·소독시설을 말한다.
2. “재난형 가축질병”이란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같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1종 전염병 중 발생 시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을 말한다.
3. “특별방역기간”이란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당해연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기간을 말한다.
4. “평시방역기간”이란 특별방역기간을 제외한 3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을 말한다.
5. “운영주체”란 방역소를 설치하거나 제6조에 따라 방역소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이하“방역소”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소재지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554-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방역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별방역기간 축산농가 세척·소독 및 소독필증발급
2. 평시방역기간 필요시 축산농가 세척·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3. 방역관리를 위한 축산농가 이동경로 및 정보수집
4. 그밖에 방역소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방법)

① 운영시간은 다음의 호와 같다

1. 평시방역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특별방역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3. 특별방역기간은 공휴일에도 운영한다.
3. 경계단계와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 운영시간을 변동 할 수 있다.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인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운영주체는 상주인력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경계단계와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 운영인력을 변동 할 수 있다.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탁) 군수는 방역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4., 2011. 7. 25.,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 2017. 10. 31., 2019. 1. 15.>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8.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24., 2013. 3. 23., 2015. 6. 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24., 2013. 3. 23., 2015. 6. 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 2017. 10. 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4.,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전문개정 2010. 4. 12.]

**부칙** <제16226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